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공단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 확보(안 제1조)

나. 사용료의 조정 및 감면 조항 개정(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별표 1, 별표 3,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2013. 3. 14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탁관리자”라”를 ““수탁관리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시장에게 하여야”를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재산”이라”를 ““재산”이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활체육의장, 문화체육의장”을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다른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9조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등 징수)”를 “(사용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등은”을 “사용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의2(종전의 제10조의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로,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5호에 따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1회이상”을 “연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국민생활관 사용료(제10조 관련)

1. 대인 사용료

구 분			기간별 사용료(원)		비고	
종 목	사용기간		2013.7.1 ~ 2014.6.30	2014.7.1 이후		
수 영	월 회원		어린이, 노인	38,000	42,000	
			청소년, 군인	46,000	50,000	
			성 인	55,000	60,000	
	1 일 회 원	개 인	어린이, 노인	2,300	2,500	
			청소년, 군인	2,700	3,000	
			성 인	3,300	3,500	
		단 체	어린이, 노인	1,800	2,000	
			청소년, 군인	2,300	2,500	
			성 인	2,800	3,000	
아쿠아 로빅	월 회원		어린이, 노인	38,000	42,000	
			청소년, 군인	46,000	50,000	
			성 인	55,000	60,000	
헬 스	월 회원		어린이, 노인	22,000	24,000	
			청소년, 군인	33,000	36,000	
			성 인	38,000	42,000	
에어로빅	월 회원	일 반	33,000	36,000		
차 밍	월 회원	일 반	22,000	24,000		
요 가	월 회원	일 반	33,000	36,000		
배드민턴	월 회원	일 반	33,000	36,000		
탁 구	월 회원	일 반	28,000	30,000	2시간 기준	
	1일 회원	일 반	2,300	2,500		
농 구	1일 회원	일 반	2,300	2,500		

※ 위 종목 외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 “수영”종목의 월 회원 중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사용 가능일 중 3일을 공제한다.

<용어의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임.
- “월 회원”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 3~6일(월~토) 이용회원을 말함.
- “어린이”란 초등학생(7세~12세 이하)을 말함.
- “청소년”이란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을 말함.
- “성인”이란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 목적	단위	기간별 사용료(원)				비고
			2013.7.1 ~ 2014.6.30		2014.7.1 이후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체 육관	체 육 행사	주간	90,000	120,000	9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120,000	150,000	
	체 육 행사 외	주간	120,000	150,000	120,000	150,000	
		야간	150,000	180,000	150,000	180,000	
소극장	공연,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3,000	55,000	47,000	60,000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이며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임.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 설 명	단 위	기간별 사용료(원)		비 고
		2013.7.1 ~ 2014.6.30	2014.7.1 이후	
무대조명	1회 4시간 기준	33,000	36,000	· 1회 4시간 이내로 함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		33,000	36,000	

※ 무대조명 및 냉·난방비는 이용시만 사용료 징수함.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구분	대 상	감면요율	비고
행사 및 대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		
개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사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활동 보조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시민의 심신 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민생활관은 구미시 원평동 964-45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에 둔다.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4. (생 략)	제3조(사업) ----- <u>각 호</u>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 ①----- ----- ----- ----- ----- “수탁관리자”라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 년 이내로 한다.

③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 (이하 “재산” 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 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의장, 문화체 육의장, 청소년여가 선용의 장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②----- 따라 -----

-----.

③-----

-----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

④----- 따라 -----

---- “재산” 이라 -----
-----.

제5조(지원) -----
--- 따라 -----

-----.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 육의 장-----

다.

② (생 략)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료등 징수) ①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민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

④-----

--- 다른 법인 -----

---- 아니 된다. -----

----- 아
니하다.

제9조(사용허가) -----

----- 받은 자-----

-----.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우청소년, 장애인(1~3급 동행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자, 상이등급 1급 동행자 1인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1]내지 [별표3]과 같다.

④징수된 사용료등은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1인 2종목이상 신청시에는 사용료의 20%를 할인 할 수 있다.

⑥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삭 제>

<삭 제>

④----- 사용료는 -----

-----.

<삭 제>

<삭 제>

⑦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에게 50%를 감액한다.

<삭 제>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소지한 자에게 50%를 감액한다.

<삭 제>

⑨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의 감액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한다.

<삭 제>

제10조의1(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1. -----
----- 따라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시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③ (생략)

<신설>

②----- 따른 -----.

1. 제1항제1호-----
----- 10퍼센트-----

----- 10퍼센트-----

-----.

2. 제1항제2호-----
----- 10
퍼센트-----

----- 10퍼센트--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5호에 따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u>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u> <u>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u> <u>대상은 별표 4와 같다.</u>
제11조(회계 및 운영) ①<u>제4조1항</u> <u>규정에 의하여</u> 국민생활관의 관 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 는 독립 재산제를 원칙으로 한 다. ②제1항 규정에 <u>의하여</u> 운영 결 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수탁관리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u>연1회</u> <u>이상</u>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u>의하</u> <u>여</u>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제14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제11조(회계 및 운영) ①<u>제4조제1</u> <u>항의 규정에 따라</u> ----- ----- ----- -----. ②----- <u>따라</u> ----- ----- ----- -----. 제13조(감독) ①----- ----- ----- <u>연1</u> <u>회 이상</u> ----- ----- -----. ②----- <u>따라</u> ----- ----- ----- -----. 제14조(위탁운영의 철회) ----- ----- <u>각 호의 어</u>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 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이 조례에 <u>의한</u> 시장의 명령 을 위반하였을 때 5. <u>기타</u>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는 하나</u>-----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따른</u> ----- ----- 5. <u>그 밖에</u> ----- ----- 제15조(시행규칙) ----- <u>시행</u> <u>에</u> ----- -----.
---	--

<용어의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임.
- “월회원” 이라 함은 1개월 입장으로 주 6일(월~토) 이용회원을 말함.
-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생(7세~12세 이하)을 말함.
- “청소년” 이라 함은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미만의 자를 말함
- “군인” 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
- “성인” 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 중에서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노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 “단체” 라 함은 인원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단 위	요 금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 간	90,000원	120,000원
		야 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 간	120,000원	150,000원
		야 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임.
- ※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
- ※ 소극장 1시간 사용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평일 : 10,000원
토·일·공휴일 : 12,000원으로 함

<용어의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임.
- “월 회원” 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 3~6일(월~토) 이용회원을 말함.
- “어린이” 란 초등학생(7세~12세 이하)을 말함.
- “청소년” 이란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군인” 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을 말함.
- “성인” 이란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노인” 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단체” 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 목적	단위	기간별 사용료(원)			
			2013.7.1 2014.6.30		2014.7.1 이후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간	90,000	120,000	9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120,000	150,000
	체육행사 외	주간	120,000	150,000	120,000	150,000
		야간	150,000	180,000	150,000	180,000
소극장	공연,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3,000	55,000	47,000	60,000

-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시간 중 “4” 시간 이내 사용금액이며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임.
-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별표3(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무대 조명	무대조명 시설	1회 4시간 기준	30,000원	·1회 4시간 이내로 합 ·사용 1시간 미만은 1 시간 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8,0 00원으로 합
냉· 난방	냉난방 시설		30,000원	

※ 무대조명 및 냉·난방비는 이용시만 사용료 징수함.

<신 설>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	단 위	기간별 사용료 (원)		비 고
		2013. 7. 1 2014. 6. 30	2014. 7. 1 이후	
무대 조명	1회 4시간 기준	33,000	36,000	· 1회 4시간 이내로 합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 난방		33,000	36,000	

※ 무대조명 및 냉·난방비는 이용시만 사용료 징수함.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 4]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구분	대 상	감면 요율	비고
행 사 및 대 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 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		

구분	대 상	감면 요율	비고
개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100 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사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활동 보조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

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본조신설 2012.7.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알릴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